

주식회사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2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일 시 : 2019년 9월 18일 오전 9시 3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13층(여의도동,농협재단빌딩) 내 회의실
3. 출석주주현황 : 발행주식수 600,000주 중 참석주식수 600,000주
 총주주수 1명 중 참석주주수 1명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본 회사”라 한다)의 박영희 의장이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소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참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본 주주총회가 상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 승인의 건

의장은 당사가 배부한 회의자료 및 「별첨 1.」 문서를 통해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으니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에 대한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오전 10시 00분)를 선언하다.

위 의사의 결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19년 9월 18일

주식회사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및 대표이사 박 영 희



별첨 1.

정관변경에 따른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	비고
<p>제1조(상호)</p> <p>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주식회사 엔에이치공모상장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NH 1 Publicly Listed REIT Co., LTD”라 한다.</p>	<p>제1조(상호)</p> <p>회사의 상호는 국문으로는 “<u>주식회사 엔에이치프라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u>”(이하 “회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u>NH Prime REIT Co., LTD</u>”라 한다.</p>	<p>상호명 변경</p>
<p>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①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p> <p>3.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p>	<p>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①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p> <p>3. <u>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주주 배당수익이 30%를 초과하여 하락할 것이 예상되거나, 총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계약 등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중요한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자산의 30%를</u></p>	<p>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사전 반영 (2020. 2. 21 시행)</p>

	<p><u>초과하는 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u> <u>우라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u> <u>업계획서에서 이미 보고한 내용과</u> <u>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은</u> <u>제외.</u></p>	
--	---	--

<p>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p>	<p>제 26 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p> <p>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연기주주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주식 총수로써 주주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u>제2항 제10호, 제14호 및 제15호</u>의 사항에 대한 연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한다.</p>	<p>부동산투자회사 법 제12조 제3 항 반영</p>
--	--	---------------------------------------

<p>부칙<2019. 5. 30. 제정></p> <p>제 1 조 (시행일)</p> <p>이 정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제15조의3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2019년 9월 16일 예정)부터 시행하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제15조의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부칙<2019. 5. 30. 제정></p> <p>제 1 조 (시행일)</p> <p>이 정관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제15조의3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u>개정에 따라 회사가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부터 시행하며, 같은 날부터 제11조 제1항, 제15조의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u><2019. 9. 18. 개정></p>	<p>전자증권제도와 관련된 사항 적용</p>
	<p>부칙<2019. 9. 18. 개정></p> <p>제1조(시행일)</p> <p>본 개정 정관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새 부칙 추가</p>